

영등포구의회
제16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주범 의원 외 4인 발의】



2011. 9. 19

運 營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8호로 2011년 9월 15일 김주범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도시시설관리공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속임에도 별도 표기되었던 교육지원과를 삭제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현재에 맞게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 제2호바목)

- 나. 기존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- 다.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
- 라.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더하여 명시함.(안 제8조제2항)
- 마.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6항)
- 바.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및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7항)
- 사.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가 기존에 '연장자'로 되어있던 것을, 2011.7.14. 공포된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'최다선의원을 우선 자격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 연장자의 순'으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2항)
- 아.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의 경우 직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4항)
- 자. 소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및 제62조

5. 검토의견

-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삭제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함.
- 안 제3조제3항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
- 안 제8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추가 하고 같은조 제6항과 제7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그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를 기존의 '연장자'에서 2011.7.14. 공포된 「지방

자치법」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‘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’ 하도록 개정함.

- 제12조제4항에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시 직무 대리자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리하도록 함.
- 제12조제5항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“의장등의 선거”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